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3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정재의원안)	2

I. 개요

1.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3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10.
- (3) 회 부 일 : 2026. 4.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정재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안 제100조의35 신설) ○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② 국내에서 생산될 것 ③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030. 12. 31.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5년간 균등분할한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5 신설) ○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 인적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김정재의원안 2026. 4. 10. 발의(의안번호 18231)

□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국내 생산 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내국인 중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판매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구원, 기술인력 등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IRA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이 있는데, AMPC란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음¹⁾.

해외 직접생산의 유인 및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기지의 국내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 기적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와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의 직접적인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생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세제지원 제도가 구축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 인적공제는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10. 25.

유출되지 않고 국내기업에 머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2026년 1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지원대상·방식 등은 효과성·형평성·재정여건 및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검토하여 2026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대규모 조세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역시 특정 전략산업 분야에 한하여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먼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후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²⁾

둘째, 개정안은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제수준은 조세지출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친환경 에너지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등 적격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일본 전략물자 국내생산 촉진세제: 반도체, 배터리,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재생항공연료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문 의 처

02)6788-5154
